



투명하고 청렴한 클린 식약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경종합상사(주) 보은
지점-자근]

1. 우리 청에서는 동경종합상사(주)에서 제조 판매한 의약품(한약재) 인 “자근”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동경종합상사(주) 보은지점	자근	DK9264-441 (20100224)	품질부적합 (카드뮴 기준한도 초과)	규격품 포장재에 제조원이 (주)동의한방제약으로 허위표시기재

2.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약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약정책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경상북도지사(식의약품안전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한국소비자원장, 한국제약협회, 대한한약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주무관 서승호 주무관 솔원수 의료제품안전과 전결 03/04
장 작종훈

협조자

시행 의료제품안전과-1011 (2011. 03. 07.) 접수

우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20(둔산동 935) / <http://daejeon.kfda.go.kr>

전화 042)480-8767 전송 042)480-8770 / titmddh1103@korea.kr / 대구민공개

친절·청렴 행정, 식약청의 자존심입니다. 본조리식고센터(www.kfda.go.kr)

No : KFDA-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회수명령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서승호	042-480-8767	042-480-8770
회수사유	품질부적합(카드뮴 기준 한도 초과)		회수등급	2등급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동경종합상사(주) 보은지점		
소재지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길상리 22-9		
전화번호	043-544-8511	FAX번호	043-544-2369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자근	분류	의약품(한약재)
주성분	자근		
효능·효과			
포장단위	봉지	제조번호	OK9264-441
		제조일자	2010.02.24

대전식약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명령 조치 하였습니다.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한약재) 취급자는 의약품(한약재)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1. 3.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생략